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정기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정기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2년 12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하나로 연결된 정기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명 칭		세 목
무배당 ① 하나로 연결된 ② 정기보험	1형(일반심사형)	기본형
		15% 체증형
		20% 체증형
	2형(간편심사형)	기본형
		15% 체증형
		20% 체증형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또는 ② 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할 수 있으며 판매채널에 따라 상품명칭 중 ① 또는 ②의 문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1) 1형(일반심사형)

보험기간	구분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90세 만기	기본형	20년납	만 15세~70세	만 15세~70세	월납
		전기납	만 15세~70세	만 15세~70세	
	15% 체증형	20년납	46세~70세	만 15세~70세	
		전기납	만 15세~70세	만 15세~70세	
	20% 체증형	20년납	61세~70세	만 15세~70세	
		전기납	만 15세~70세	만 15세~70세	

(2) 2형(간편심사형)

보험기간	구분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90세 만기	기본형	20년납	30세~67세	30세~70세	월납
		전기납	30세~51세	30세~70세	
	15% 체증형	20년납	56세~70세	30세~70세	
		전기납	30세~70세	30세~70세	
	20% 체증형	20년납	66세~70세	51세~70세	
		전기납	30세~70세	30세~70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 29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약관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장기유지보너스는 계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고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장기유지보너스계약자적립액에 적립한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6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12 \times 5 \times \text{주계약 보험료} \times 13.0\%$
84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12 \times 2 \times \text{주계약 보험료} \times 10.0\%$
120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12 \times 3 \times \text{주계약 보험료} \times 5.0\%$

나. ‘가’의 해당일*이라 함은 실제 보험료 납입일(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다.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의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계산한다.

14. 자동연장보험기간에 관한 사항

가. 자동연장보험기간은 피보험자가 90세가 되는 계약해당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기간동안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적용된다.

나. 자동연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이 계약의 90세 계약해당일 시점의 계약자적립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동연장보험기간의 시작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5. 종신전환계약으로의 전환

가. 종신전환계약이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전환 전 계약의 가입당시의 기초율을 적용한 종신보험을 말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보험료를 60회 이상 납입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종신전환계약으로 전환(이하 ‘종신전환’이라 한다)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때, 종신전환계약의 피보험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와 동일해야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종신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라. 종신전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환일부터 종신으로 한다.

마. 종신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전환일 기준 해약환급금을 종신전환계약의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바. ‘마’에서 계산한 종신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전환 전 계약의 전환일 기준 기본사망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전환 전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종신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전환일 기준 기본사망보험금으로 한다.

16. 2형(간편심사형)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2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의적심사(이하 ‘일반심사’라 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이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별첨 제2호 ‘간편심사용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참조)을 활용하여 계약심사과정을 간소화 한 것을 의미한다.

- 나. 계약자가 2형(간편심사형) 가입시, 회사는 1형(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고, 2형(간편심사형)과 1형(일반심사형)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며,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참조)을 받는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2형(간편심사형)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별첨1)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대신한다.) 이 경우 비교대상인 1형(일반심사형)은 2형(간편심사형)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다. 계약자가 2형(간편심사형)을 청약할 때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가 그 계약의 청약일부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를 통하여 1형(일반심사형)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라. 2형(간편심사형)의 계약일부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형(간편심사형)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가 1형(일반심사형)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2형(간편심사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마. ‘라’에 의하여 1형(일반심사형)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2형(간편심사형)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1형(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바. 2형(간편심사형) 가입시 회사는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별첨 제2호 ‘간편심사용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참조) 이외의 항목을 사용하여 계약심사를 하지 않는다.
- 사. 2형(간편심사형)의 청약서는 1형(일반심사형)의 청약서와 구별하기 쉽도록 별도의 청약서(별첨 제2호 참조)를 사용한다.

17.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 및 연금액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2)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은 전환 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 시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의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 명칭이 변경된 특약을 따른다
- (3) 연금전환은 전환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다. 상품 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별첨 제1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이 상품의 2형(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상품의 2형(간편심사형)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피보험자가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회사가 일반심사를 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이 상품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또는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기간 및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형(일반심사형)과의 보험료 비교(예시)

상품명		(무)하나로 연결된 정기보험					
상품구분		2형(간편심사형)		1형(일반심사형)			
보장 내역	사망 보험금	0,000만원		0,000만원			
계약 승낙여부		일반상품 대비 질문항목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비교		[기준: 남/여, 00세, 단위: 원]					
		보험종목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2형(간편심사형)	1형(일반심사형)
		xxx형	00년	00년	x,xxx만원	00,000	00,000

- 비교 대상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에도 회사는 비교대상 상품인 일반심사보험을 간편심사 상품보다 보험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함.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보험모집인 확인]

보험모집인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험모집인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모집인 _____으(로)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보험계약자 (인/서명)

(별첨 제2호)

간편심사용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여기서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5-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 1) 승용차(영업용) 2) 승용차(자가용) 3) 승합차(영업용) 4) 승합차(자가용)
 - 5) 화물차(영업용) 6) 화물차(자가용) 7)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영업용)
 - 8)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자가용) 9) 건설기계 10) 농기계 11) 기타(예 : 폭발물, 인화물 수송차량 등)※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
- 5-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료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사용하십니까?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6. 월평균소득 : 계약자 ()만원 / 피보험자 ()만원

(별첨 제 3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4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5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